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김성인
한국낙농신문 국장

지난 1월 발생된 구제역이 6월 들어 잠잠해 지면서 지난 18일을 기해 충남지역도 종식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6개월 동안 축산업계는 농림수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구제역 차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심혈을 기울인 만큼 차후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제역 방역대책 태스크포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1일 국회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첫째, 가축의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해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않으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동시에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퍼지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도록 했다.

셋째,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과 가축방역관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어 지난 18일 구제역 방역대책 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를 열어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농민이 소독절차를 밟지 않고 입국하면 살처분(매몰) 보상금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닷새간 자신의 농장 또는 타인의 가축농장에 대한 진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발생한 구제역의 피해규모에 따라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정한 소독 검역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살처분(매몰처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등의 제재도 받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 때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가동했던 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농장주 등의 출입국 정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달하면 검역원은 이들에게 입국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농장주 등은 메시지에 따라 공항만의 검역관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축산농가 및 가축 거래상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축산업 면허제' 와 '거래상인 신고제' 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축전염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 가축전염법 개정안과 농식품부 방침 내용을 보면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전파에 대한 양축농가 책임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시켰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함은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신고 교육 소독 등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

검사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시에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귀국 후 5일 동안은 목장이나 농장에 진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정부의 가축방역 예방 활동을 위한 권한도 강화시켰다.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된다면 양축농가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심리적 부담감은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농가 실수로 질병이 발생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될 경우, 목장 폐쇄로 인한 생계수단은 물론 거기마다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되고 급기야 형사처벌까지 당한다면 과연 그 농가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물론 질병은 반드시 철저한 예방을 통해 차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규제로 농가들에게 압박감을 준다면 질병예방 차단이라는 효과는 지금보다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가들은 축산을 하는 동안 항상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손해배상이라는 부담을 가슴에 안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낙농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2007년도 등록제 도입과 함께 밀식사육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원유생산량을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고시기준대로라면 우사면적 1000m²(303평)인 경우 착유우는 약 50두 사육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문제는 지역에 따라 상당수 농가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원유생산량은 일시에 감소될 가능성성이 높아질 것이다. 초과된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공奎터가 발생돼 소득감소가 불가피해 진다. 우사를 증축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가축전염병법 개정과 더불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농가들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부담감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아무튼 농가들의 가축전염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④